

國際人道法의 挑戰과 課題*

鄭雲章

I. 머리말

제네바 제협약의 성립 제50주년을 맞은 이 時點에서, 또한 兩次에 걸친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수 많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로 점철된 한 세기를 거의 다 보내고 새로운 세기, 새로운 千年紀의 문턱에 들어선 이 時點에서 본 주제를 다루는 이번 세미나의 意義는 참으로 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의 현 位相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전자에서는 최근의 인도법 발전상의 특색을, 후자에서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최근의 도전면을 각각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꼭 달성되기를 바라는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서 약간의 과제를 짚어보는 대략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긍정적 측면(국제인도법 발전상의 특색)

* 본 논문은 1999년 대한국제법학회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8회 국제인도법세미나에서 主題講演한 내용으로서, 2000년 12월에 발간 예정이었던 선생님의 「고회기념논문집」에 게재하고자 생전 선생님께서 보내신 글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미래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오랜 과거의 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3,300여년 전, 古代 Assyria에 전해오는 한토막의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Assyria에 超人的 힘을 가진 Gilgamesh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어느 전쟁에서 Hawawa라는 巨人과 싸워, 그를 부상케하여 생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 巨인이 살려달라고 간 청하자, Gilgamesh는 마음이 動하여 “붙잡은 새도 새집으로 돌려주거늘, 사로잡은 이 者도 그의 어머니 팔 안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은 “장군님이 敵에게 사로잡힌다면, 그들은 장군님을 돌려보내 주겠습니까? 언제 포로가 석방된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하면서 부상한 그 巨人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古代의 전쟁관행에 따랐던 부하들의 그 행위가 nomal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얘기는 Assyria 사람들에게 美談으로 받아 들여지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傳承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인간의 良心이랄까, 人道性의 짙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에도 흔히 듣는 말 즉, ”敵軍이 인도법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이 Gilgamesh의 부하들의 말과 흡사하여, 이런 인식은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구나 하는 점입니다.

그럼, 얘기를 19세기 중엽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전투로 인한 군대 부상병들이 제대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무수히 죽어간 그 참상은 Henry Dunant의 “Solferino의 회상”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Solferino 전투보다 4년 전에 발발한 Crimea 전쟁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Crimea半島의 戰地에 설치된 영국군 野戰病院에 종군했던 한 外科醫師 (Edward Mason Wrench)가 日記體로 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야전 병원이라고는 하나, 관료적 비효율성과 타성으로 인하여 아무런 시설도 없는 것에 후송된 수많은 부상병들이, 콜레라, 이질, 热病 등의 군대 病者들과 함께 바닥에 누워있을 뿐, 적절한 약품도 기구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손쓸 수가 없어, 많은 상병자들이 그대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군인 러시아軍 부상병을 간호해 주면, 이는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 投獄되기도 하고, 때로는 軍 醫務要員도 총들고 敵과 싸우지 않으면 비겁한 자로 취급되고, 따라서 軍 醫務機關이나 醫務要員도 敵軍의 공격대상이 될뿐더러, 군 의무요원이 敌에게 사로잡히면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포로로 취급되어 혹사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군 의무요원은 적군이 접근해 오면, 재빨리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부상병들은 戰地에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戰地에서의 일반적 상황과 풍조 속에서 1964년, 戰地 군대 상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에서 처음으로 부상병과 군 의무요원의 不可侵의 원칙, 군 의무 요원과 군 의무기관의 中立의 원칙, 치료에 있어서의 부상병의 국적을 불문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립한 것은 실로 크나큰 혁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동 협약이 체결되자, 전시에 과연 이런 조약이 준수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후의 전쟁, 특히 1870~71년의 France-Prussia간의 전쟁 때, 雙方의 交戰國에 의하여 동 협약이 잘 준수된 사실을 보고 큰 놀라움과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인식이 1899년의 전투의 방법과 수단에 관한 Hague협약 및 Hague陸戰規則을 성립도록 이끄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동 제네바협약의 意義는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날의 국제인도법 발전相의 특색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첫째는 국제인도법이 그 내용면에서 점점 더 풍요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네바법 분야에서는 1949년의 4개 협약과 1977년의 2개 추가의정서가 있습니다. 그 중, 제1추가의정서가 있습니다. 그 중, 제1추가의정서는 제네바 제협약의 보완뿐만 아니라, 전투원의 지위에서부터 전투의 수단·방법에 관한 헤이그법의 중요 기본원칙을 담았다는 점에서도 하나의 혁신을 이루었고, 제2추가의정서는 비록 그 협상과정에서 草案에 담겨져 있던 많은 규정, 예컨대 적대행위와 실시조치에 관한 부분이 많이 삭제되기는 했어도, 제네바 제협약 공통 제3조에 없었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의 금지”(제13조),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자의 보호”(제14조)등이 남아있어,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희생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겠습니다.

한편, 헤이그법 분야에서도 1980년,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의 규제협약 및 그 3개의 정서가 채택되었고 1990년대에 와서는 1995년, 동 협약 제4의정서(失明性 Laser무기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1996년에는 지뢰 등에 관한 동 협약 제2의정서의 개정을 보게되었습니다. 특히 상기 제4의정서는, Laser무기의 사용이 일반화되기에 앞서 규제되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확하게는 인도법 자체에 속하지는 않으나, 전투행위와 관련되는 조약으로서 1994년, “인도적 활동 참가요원의 安全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the Safety of Nations and Associated Personnel)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무력충돌에서 평화유지활동 및 기타의 인도적 활동의 종사자(소위 인도적 要員)의 안전이 존중되지 않은 사례 때문에 UN이 급히 서둘러서 체결된 조약

입니다. 또한 1997년에는 對人地雷에 관한 Ottawa 협약도 체결되었지요.

둘째로는 국제인도법의 준수확보 및 위반의 防止 또는 抑止를 위한 새로운 혁신 즉, 戰犯處罰을 위한 司法機關의 설치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N 안보 이사회에 결정에 의하여 비록 ad hoc의 기관이기는 하나, 1993년 舊Yugoslavia에 국제 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Yugoslavia)가, 그리고 1994년에는 Rwanda에도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1998년) 7월에는 Roma에서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規程(Statute)의 채택을 보게된 것입니다. 이는 人道法上 참으로 역사적 event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하여 국제적 재판기관에 의한 刑事制裁를 가하자는 案은 벌써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가령 ICRC 창설자의 한 사람인 Gustav Moynier는 1964년의 상기 제네바협약 위반자에 대한 재판기관의 설치를 계획한 바 있었고, 제1차대전 후 Versailles 조약 제227조에는 “국제적 도덕과 조약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흉악한 범죄”로 독일 황제를 국제재판에 회부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어느 것도 실현되지 못하였지요. 전범재판소로는 제2차대전 후, Nuremberg와 Tokyo에 각각 설치되었던 군사재판소가 實存하였으나, 이것들의 설치배경과 상황은 다른 것이었으므로, 국제형사재판소(ICC)規程채택은 初有의 일로서 그意義는 참으로 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동 規程이 發效하자면 적어도 60개국이라는 많은 국가의 비준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동 재판소가 설치되는 데에는 아직 긴 時日이 소요될 듯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 충돌이거나 비국제적 충돌이나 불문하고 Genocide, 人道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및 침략행위 등 4대핵심적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동 재판소가 발족한다면, 극히 잔악한 행위를 행하고도 처벌되지 아니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 전쟁범죄 중에는 제네바 제협약 및 동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 뿐만 아니라, 그 심대한 위반의 list 중에서 예컨대, 민간주민이나 민간물자에 양향을 미치는 무차별공격의 개시 또는 특히 잔인한 무기의 사용 등을 빠져있습니다. 이는 동 規程의 채택과정에서 이것들에 대한 consensus도달이 곤란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점은 동 規程 발효 7년 후에 갖게 될 동 規程에 대한 재검討 회의에서 전쟁범죄의 list 완성을 위하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는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 제네바제협약 추가의정서의 약간 규정이 관습법규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관습법규로서 당해 규정을 무력충돌에서 적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약 10년전, 그러니까 1989년과 1990년, San Remo 국제인도법연구원의 Round Table(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미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다음의 제규칙은 관습법으로서 적용되거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즉, 민간주민만이 사용하는 거주 가옥의 보호, 민간주민의 생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물자의 보호, 공격의 경우 민간주민의 傷害와 생명의 손실 등을 피하기 위한 사전경고의무와 그 외에 지뢰, 위장 성무기(booby-traps)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 등이며, 또한 이미 관습법규로 확립된 化生 무기의 사용금지, dum-dum탄 및 毒物의 사용금지 등도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ICRC는 1994년 6월 8일의 한 覺書를 통하여, 추가의정서에 유래하되 이미 관습법으로 轉化된 법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15세 이하 아동의 전투참가의 금지입니다. 단, 최근에는 전투참가 최저연령을 15세로부터 18세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하나는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의 금지와 무차별공격 및 과다한 민간 손실을 일으키는 공역의 금지와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의 파괴금지 등입니다.

넷째로는 특히 1990년대 이후, 무력충돌 희생자와 難民의 수효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즉, 이들에 대한 인도법상의 구호활동이 활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색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대응이 여러 인도적 기관 또는 단체, 예컨대 UNHCR, ICRC,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유럽공동체 인도사무소(ECNO, 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Office) 및 기타 수많은 NGO 등으로부터 각각 행하여지다 보니, 인도적활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긴급하게 필요한데도 구호와 원조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곳도 있게 마련이어서 인도적활동에 대한 국제적 調整이 긴요하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난민 수효의 격증과 더불어 UNHCR의支出도 그만큼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잠시 살펴본다면, 1975년 U.S.dollars로 6,900萬弗에 불과하던 것이 1989년에는 5억 7,800萬弗, 1993년 이후로는 13억불 내지 14억 3,000만불로, 1998년과 1999년에는 그보다 약간 적은 10억불 정도입니다.

다섯째는 1990년대에 와서, 국제인도법의 준수확보와 위반의 방지로써 무력충돌 희생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1993년에는 ICRC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개최된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국제회의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1994년과 1995년에는 제네바에서 잇달아 이 문제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가 스위스정부에 의하여 개최되어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 여

리가지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건의한 바 있습니다.

III. 부정적 측면(국제인도법에 대한 도전)

위에서 본 것처럼, 法과 제도는 발전하고 있고, 국제인도법의 준수확보의 희생자 보호를 위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에, 오늘날 도처에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 최근에는 무력충돌은 아시다시피 거의 모두가 비국제적인 형태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금년들어 10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35件의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오직 상대방을 멸망·파멸케 하려한다는 점이고, 前線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또한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이라는 인도법상의 전통적인 기본원칙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무력충돌에서는 인도법의 하나의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라고 할 Jean-Jacques Rousseau의 유명한 말, “전쟁은 오직 국가 및 군대 간의 관계이고 개개인은 단지 兵士로서 서로 적대관계에 있을 뿐,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전혀 통용되지 않는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무력충돌에서의 대혼란, 무법천지, 무수한 인도법의 위반 내지 유린으로 인하여 결국 수많은 개인이 고통받게 되고 또한 평화의 회복을 한층 더 어렵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아시다시피, 적용되어야 할 인도법의 규칙이 흡결되어 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전당사자들에게 해당초 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Sommaruga ICRC총재의 지적처럼, 이들 교전당사자에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無知와 무관심뿐만 아니라, 아예 멸시하는 자세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형의 무력충돌이 영국의 전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전망에 의하면, 21세기에는 더욱 escalate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법에 대한 무관심 내지 등한시, 輕視는 여타의 일부 국가에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들 국가는 인도법의 목적에는 찬동하면서, 또한 제네바제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인도법의 존중 및 존중보장 의무를 平時부터 어느 정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날의 도전은 무엇보다도 人道(humanity)에 대한 價值意識의 일반적 低下, 극단적인 경우 가치의식의 缺如에 基因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최근의 대다수의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獄體化 내지는 봉괴, 경제적 빈곤, 文盲, 인종적 또는 종교적同一性의 주장, 倫理의 缺如, 전통적 가치관의 消失과 오직 배타적 倫理의 대두 등,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人道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고 마침내는 법의 無視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IV. 약간의 과제

그럼, 오늘날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력충돌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법의 위반도 escalate되는 현상에 비추어, 인도법의 권위와 신뢰성을 회복하고 그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接近方法을 택하여 할지, 그 과제 중의 약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巨視的 面에서 두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추락된 人道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이 不減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意識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長期間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일은 정부의 有關機關, 赤十字社, 학계, 언론계, 각급 교육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하여 社會전반에 이에 관한 새로운 意識, 새로운 풍조를 조성하는 꾸준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최근에 ICRC의 Sommaruga총재는 “人道에 대한 새로운 계약”(A new contract of humanity)을 제창한 바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호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違法精神의 확립입니다. 戰史를 통하여 보더라도, 국내에서 법의 지배원리가 확립되고 法의 준수의식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국민은, 무력충돌에서의 인도법의 적용 및 준수에 비교적 잘 순응함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自國 국내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회박하고 법규위반에 무감각한 국민은 무력충돌에서의 인도법 준수에 강한 違和感을 갖는다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기야 自國의 법규도 잘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력충돌에서 人道法을 지키라고 한들 百年河清을 기다리는 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違法意識의 함양이 先決的으로 요청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

시 長時日을 요하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각계 각층에서 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다가오는 새 세기에는 기필코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엔, 徵視的面에서 약간의 구체적 과제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제인도법의 효과적 보급 및 교육의 실시문제입니다. ICRC도 인도법의 실시를 위하여 가장 priority를 두어야 하는 것이 교육 및 보급이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행하여지고 있는 現地에 파견되었던 ICRC要員이 몇몇 兵士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은 오직 銃쏘는 것 외에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報告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内戰의 경우에도 공통되는 일로 보이며,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餘他의 많은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기에 ICRC는 벌써부터 특히 군대에서의 인도법 교육에 관하여 권고하기를, 인도법을 단지 군서교육의 주변과목에 넣어 이에 대해 약간의 시간을 배정하기보다는 인도법을 군서교범의 고유부분, 핵심부분에 넣어서 더욱 비중있는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및 보급에 관하여 특히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을 적어볼까 합니다.

그 하나는, 군대구성원을 위한 훈련계획 안에 국제인도법에 관한 훈령(instruction)을 어떻게 항구적·체계적으로 편입(incorporate)케 할 수 있는가. 특히 군대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수준에 응한 교육 및 보급은 어떻게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UN의 결정에 의한 군사작전 또는 평화유지 내지 치안유지활동에 종사하게 되는 군대에게, 적절한 인도법의 교육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또한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게 국제인도법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인도법의 지식 습득만이 아니라, 장기적·체계적 안목에서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인도적 정신을 함양하고, 무력충돌의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가라는 점 등입니다.

둘째는 위의 교육문제와도 관련됩니다마는, 사실은 벌써부터 ICRC에 의하여 적극 권장되고 있는 정부내 부처간 위원회(national interministerial committee)의 설치문제입니다. ICRC가 권장하고 또한 이미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한 국가의 경우, 거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동 위원회의 임무는 인도법 협약의 실시의무와 관련되는 국내立法 및 기타의 제반 국내조치를 검토하고 준비하여 이를 적절한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일, 그리고

교육 및 보급에 관한 폭넓은 계획과 실시에 관해서도 이를 준비·점검하고 그 효과에 관하여 평가하며, 해당 부처에 대한 전의서와 보고서 작성, 더 나아가서는 二國間 또는 多者間 국제협력의 테두리에서, 인도법 실시에 관한 제반 국내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보급을 포함하여 채택된 제반 국내조치의 집행상황을 monitor하는 기능도 부여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설치한 국가들도 있고, 1990년대에 와서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도 있습니다. 후자, 즉 비교적 최근의 경우를 보면, 1992년에 Uruguay와 Bolivia가 또한 1994년에는 Argentine이 각각 정부 부처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그 명칭은 “국제인도법 적용위원회”(Committee for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또는 “국제인도법 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로 되어 있으며, 구성은 거의 공통적으로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각 대표로 임명된 공무원과 司法部, 학계 및 당해 국가의 적십자社의 대표들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기관의 설치는 ICRC도 지적한 것처럼, 국제인도법의 실시보장, 인도법의 존중 및 존중보장을 위한 平時부터의 국가의 意志와 기본자세의 표현으로서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Bolivia의 위원회 설치에 꺽 놀라움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오히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21세기 초두에는 꼭 그 설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설치가 실제로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의 位相을 한 次元 높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셋째는 국제인도법의 실시를 위한 국내입법 및 필요한 기타 조치의 조속한 제정 촉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80조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또한 ICRC는 일찍부터 이에 관한 체약국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또는 이 문제에 관련되는 각 체약국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미 취하여진 국내입법이나 조치가 있는 경우 또는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여러번 각 체약국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이 요청에 응하여 관련 사항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국가는 전체 체약국의 약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에 제출된 다른 나라의 서면 내용을 보면, 인도법 실시에 관련되고 합니다. 이를 관하여 최근에 제출된 다른 나라의 서면 내용을 보면, 인도법 실시에 관련되는 법률의 제정, 상기 정부 부처간 위원회의 설치, 인도법의 교육 및 보급계획과 그 성과, 혹은 군사교범의 개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군사교범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예컨대 Netherlands 국방부 1993년 10월, 그 이전의 군사교범을 대체하는 새 교범을 간행하

였는데, 여기에는 “국제인도법의 준수”(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라는 부제를 달고,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가능한 모든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 1992년에 “무력충돌에서의 인도법”(Humanitarian law in armed conflicts)이라는 교범을 발간하여 군사교육에서는 물론이고 책임있는 민간 要員의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1994년에는 이 교범에 대한 註釋書(Commentary)도 발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晚時之嘆이 있기는 하나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상기 정부 부처간 위원회가 설치되고, 동위원회는 이를테면 大韓赤十字社 인도법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면서 필요한 국내조치와 입법사항을 준비하고 관계 부처에 이를 건의하며 또한 草案을 작성·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要는 인도법의 실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되며, 우선 이에 관한 확고한 인식을 정부 당국에서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는 국제인도법상의 약간의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책의 검토와 모색입니다.

그 중의 하나는 제네바제협약 및 제 1추가의정서상의 이익보호국 제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여러 무력 충돌에서 이익 보호국 제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여러 무력 충돌에서 이익보호국이 지명·수락된 경우는 단지 1956년의 Suez사태, 1961년의 Goa사태, 1971년~1972년의 印度-Pakistan간의 무력충돌과 1982년의 Falkland戰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들 경우의 이익보호국은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부여된 원래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주로 인도적 임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이익보호국제도가 활용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더욱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내지 개선책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도 새로운 세기에서의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협약 제 1추가의정서상의 국제사실조사위원회(International Fact-finding Commission)의 활용방안입니다. 원래 제네바제협약에는 각각 그 52조, 53조, 132조, 149조에 공통적으로, 충돌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제협약의 위반혐의에 대하여 충돌당사국 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적으로 충돌당사국의 협력여하에 의존된다는 단점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 1추가의정서 제 90조에 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꽤 기대를 모았던 이 사실조사위원회도 그 설치 아래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국가가 동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동 위원회의 활용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는 새로운 제도의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인도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새 제도, 새 장치를 屋上屋格으로 마련하는 것 보다 현행 제도의 활용촉구 내지는 그 개선이 더욱 바람직합니다만, 최소한도로 몇해 전부터 ICRC에 의하여 제창된 다음과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의정서의 비준문서 受託國(스위스)에 의한 체약국회의의 개최를 定期化한다는 것입니다. 제 1추가 의정서 제 7조에 의하면, “제협약 및 본 의정서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의 요청과 체약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체약국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체약국의 합의로써 정기적 개최로 이끈다면, 동 회의는 국제인도법의 존중 및 존중확보와 위반의 방지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인도법의 국내 보급 또는 제반 국내조치 등에 관한 의견의 교환과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공동의 廣場(forum)으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섯째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잘 알시다시피, 平時 또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인도적 가치관의 高場 내지 인도법 지식의 확산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그 반면에 역으로 이들 가치관을 크게 해손함에 있어서도 언론의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론의 긍정적·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도록 하는 이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일곱째는 각국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 規程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동 재판소가 앞으로 발족하더라도 그 효율적 운용에는 어려움이 수반되리라는 일부 학자들의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심대한 위반을 방지 또는 억지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동 재판소 規程의 조속한 發效와 동 재판소의 발족이 요망되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발효촉구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여덟째는, 인도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위의 문제들을 풀어나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제적 무력충돌은 물론이고 특히 오늘 늘의 수많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원인을 제거하는, 이를테면 그 뿌리를 뽑아가는 국제 공동체의 지속적인 적절한 대응과 해결 노력이 긴요합니다.

V. 맺는말

그럼 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맺는 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1992년, Belgium은 국제인도법의 실시문제와 관련하여 “제네바제협약과 제 1 및 제2추가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의 억지에 관한 법률”(Law on the repression of grave breaches of the international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Protocol I and II of 8 June 1977 additional to those Conventions)을 제정하고 이를 중대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의 큰 혁신점은 동 法에 “군사적 필요에 입각하는 어떤 자유도 국제인도법의 위반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군사적 필요에 비하여 인도성의 優位, 인도법의 가위 절대적 존중과 준수를 명시한 것으로서, 이는 실로 21세기에 인도법이 나아갈 방향과 그 位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찍이 Christian Delessert교수가 했던 말을 빌린다면,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人道의 원칙이 군사적 필요 원칙에 종속한다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逆으로 人道 원칙의 優位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세기에는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찍이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세균학자 Louis Pasteur은 말하기를 “未來는 人道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야 말로 바로 人道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세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오래도록 되풀이된 잘 못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또 새로운 잘못을 행하는 어리석음이 다시는 없도록 함으로써, 새 세기가 참으로 人道의 세기, 더 나아가서는 平和의 세기가 되기를 진정 바라면서 끝맺음하려고 합니다.